

71년도 과학기술상

편 집 실

오는 4월 21일은 과학자 기술자는 물론 우리 국민 전체가 근대적 과학기술의 수용과 적응에 주저하지 않고 과학기술이야말로 경제개발이나 사회적 문화적 근대화의 선행요건을 깊이 인식하고 과학하는 생활, 과학하는 국민의 자세를 가추며 나아가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하여 과학하는 풍토 조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정된 과학의 날인 동시에 이날을 기해 전국의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우리들 과학기술자들의 단합을 촉구하며 기술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국 과학기술자대회도 아울러 가지며 이자리를 빌려 과학계에 투신하여 과학기술의 조사,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으로 과학기술 진흥에 크게 이바지한자를 추천 받아 심사 규정에 의거 엄정 선정하여 포상하게 된다. 이렇게 하므로써 연구의욕 고취와 국민의 과학하는 정신과 풍토를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제 첫번째로 갖는 이 영광의 수상이 올해는 더욱 알찬 결실의 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과학기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요령과 심사규정을 소개한다.

1. 과학기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요령

- (1) 시상종류
가. 본상 및 진흥상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대법원장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처장관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상
- (2) 시상내용
상장, 상패 및 부상
- (3) 추천대상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개발 또는 기술 개선에 공적이 있는자와 발명 및 그의 기업화에 공로가 현저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에 크게 공헌한자
- (4) 구비서류
가. 소속장 또는 시·읍·면장 추천서 3통

- 나, 공적조서 3부
다. 이력서 3통 (탈모명함판사진 3매첨부)
라. 기타심사에 필요한 자료 (저서, 논문 업적이나 공적이 기재된 유인물, 작품인 때에는 그의 사진 및 해설서등 각 10부)
- (5) 접수기간 1971년 2월 8일~2월 28일
 - (6) 접수처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70~27 (시사통신사빌딩 801호))
 - (7) 심사방법
과학기술 각분야의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회에서 심사
 - (8) 시상일시 및 장소
가. 일시 1971년 4월 21일 10시
나. 장소 시민회관 대강당
 - (9)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처 진흥과에 (☎ 7761)문의 바람
나.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국(☎ 8431)에 문의하시기 바람

1971년 2월 4일

과 학 기 술 처 장 관 김 기 형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김 운 기

2. 과학기술상 심사규정

- 제 1 조 (목적) 본규정은 과학기술처가 매년 과학의 날(4월 21일)에 시상할 과학기술상 수상자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상의종류) 상의 종류는 본상과 진흥상으로 구분한다.
- 제 3 조 (본상) ①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에 탁월한 실적을 올렸거나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성과나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본상중 가장 우수한 것을 대통령상, 그 다

을것을 국회의장상, 대법원장상, 국무총리상, 나머지를 과학기술처 장관상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이하 과총이라 칭한다) 회장상으로 한다.

제 4 조 (진흥상) 신진 과학기술자의 연구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조사연구 개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되 과학기술처 장관상과 과총회장상으로 한다.

제 5 조 (과학기술상 심사위원회 구성) 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하기 10개 분과별로 구성되는 각 분과별 심사 위원회와 전체심사위원회를 둔다.

1. 기초과학 제 1 분과 (physical science 분야)
2. 기초과학 제 2 분과 (Life Science 분야)
3. 농림분과
4. 수산, 축산, 수의분과
5. 광산, 기계, 건설분과
6. 화공, 섬유, 금속분과
7. 전기, 전자, 통신분과
8. 의학, 치학분과
9. 약학, 보건분과
10. 생활의 과학화 및 기타분과

② 각 분과별 심사위원의 수는 7인으로 하고 매년 과학기술처 장관과 과총회장이 합의하여 위촉한다.

단, 과학기술처 장관과 과총회장은 2월말까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각 분과별 심사위원장은 소속 분과에서 호선되어 전체심사위원회 회원이 되며 심사위원장은 과총회장이 된다.

④ 전체 심사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각각 전체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며 그의장이 되고 심사 업무를 통괄한다.

제 6 조 (수상자 선정) ① 수상자의 업적 및 공적은 1960년 이후의 것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자로 한다.

② 본상 및 진흥상 수상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신청한 최우수 각 1인을 전체심사위원회에서 제 3조와 제 4조에 의한 시상구분으로 선발하되 과학기술처 장관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③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

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7 조 (심사업무) ① 수상자의 선정업무는 비밀리에 진행토록 한다.

② 간사장은 과총 사무총장으로 하고 간사는 과학기술처 직원 1명과 과총직원 1명으로 하되 전체심사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 8 조 (결과보고) ① 각 분과위원장은 3월 20일 까지 심사를 끝낸후 해당분과 수상자에 관한 다음 서류를 지체 없이 전체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전체심사위원장은 최종심사 결과를 3월말일까지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선정이유서 1통

나. 피선정자의 업적, 공적 및 필요한 증빙자료 2부

다. 피선정자의 이력서 1통

라. 피선정자의 사진 2장

제 9 조 (시상) ① 본 규정에 의거 선정된 수상자는 상장과 상패 외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상자의 업적 또는 공적이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공동 명의로 수상한다.

단, 단체에 대해서는 수상하지 않는다.

③ 사망자의 업적 또는 공적은 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수상자로 선정된 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수상할 수 있다.

④ 수상자가 수상식이 있을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과학의 날 기념식 종료와 동시에 종결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처 장관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합의 결정한다.